

수원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가단5250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

피 고 D

변 론 종 결 2021. 9. 1.

판 결 선 고 2021. 9. 8.

주 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8. 5. 24. 접수 제421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곽동우

별지)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광주시 , , ,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주시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50.55㎡

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광주시 대 27,639㎡

2. 경기도 광주시 대 159㎡

3. 경기도 광주시 대 17㎡

4. 경기도 광주시 대 200㎡

대지권의 종류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28,015분의 24,083. 끝.

(취소할 대상)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42177호로 종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2007. 10. 1.경 [E] 주식회사에서 [A] 주식회사(이하 '원고'라 합니다)로 상호를 변경한 후, 현재 서울 중구 [F]에서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업무와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신금융전문회사입니다.

소외 [B]은 원고가 취급하는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자로서 2019. 1. 22.경부터 연체하여 2020. 5. 29. 현재 12,077,035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입니다. (갑 제2호증 총괄잔액표 참조)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B]과 2018. 5. 24. 중여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동기소 접수 제42177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참조)

2. 소외 [B]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피보전 채권)

가. 소외 [B]은 원고와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신용카드규약을 적용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르기로 하였으나, 2018. 05. 08.경 발생한 [G] 대출에 의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포함하여 2019. 1. 22.경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소외 [B]에게 채무의 변제를 계속하여 독촉하였으나, 위 소외 [B]은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그 금액이 원금 9,807,49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182,359원, 법비용 87,180원 등 총 12,077,035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기준 갑 제2호증 총괄잔액조회표 참조)

3. 소외 B의 사해행위

가. 위와 같이 소외 B은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본인의 배우자인 피고 D에게 증여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이처럼 채권의 존재상태에서 채무자가 그 채무변제 이전에 가족관계가 있는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 취소

가.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 채무자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이렇듯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이처럼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며,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소외 B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결 론

변경된 청구원인

1. 파산관재인인 소송수계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2항, 제347조 제1항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계 전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민법 제406조 소정의 채권자취소소송에 해당하고, 귀원은 수계 전 원고 주식회사 A의 2021. 1. 20.자 소송수계신청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종전 원고의 지위를 수계하도록 하는 소송수계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2. 청구취지 변경의 필요성

가. 부인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며(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권 행사의 방법으로서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소를 부인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의 제3항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참조).

나. 한편,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의 소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소송과는 달리,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형성의 효과가 발생되도록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한다’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형성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부인의 법률적 효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반환 등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피고에게 단순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가 변경되게 됩니다.

3. 결 어

이에 원고의 소송수계인은 이 사건 청구취지 중 제2항을 교환적으로 부인의 소로 변경하고, 그 청구원인 또한 민법 제406조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소정의 부인권 행사로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변론하기 위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이 사건 소를 교환적으로 부인의 소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